

심사보고서

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
번호

292

2023. 6. 23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23년 5월 31일
- 다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- 라. 상정일자 : 제409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(2023년 6월 9일 상정의결)
- 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과학인재국장 김진형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사업수행 등을 위한 충북지역 대학혁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3조)
 - 대학 지원 관련 조사연구, 정책개발, 대학 협력사업 발굴·시행 등
-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연구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4조)
-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와 도 소속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- 도지사가 센터의 관리·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(필요성 및 타당성) 이 조례안은 충북도가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구인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함

나. (법적합성) 입법 절차를 준수했고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다. 다만,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타당한 설명과 센터 조직 및 인력 운영 등에 관해서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여 센터 관리·운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지역대학의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대학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, 센터의 조직과 인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3조(센터의 기능)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
2. 지역과 연계한 대학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
3. 지·산·학·연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
4. 대학 관련 규제사항 발굴 및 혁신 지원
5. 대학 협력사업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등
6. 그 밖에 대학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기관 또는 법인 등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행정적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재정적 지원)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원활한 관리·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관리·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련 서류 등을 검사·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1조(대학과 지역의 협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, 사업수행 등을 위한 충북지역 대학혁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

2. 비용발생 요인

- 센터 운영비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6조(운영비 등의 지원)

4. 비용추계 결과

- 추 계 전 제
 -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추계
- 추 계 결 과
 - 연간 1,000백만원, 향후 5년간 5,000백만원 소요
 - 인건비(기본급, 수당, 퇴직금 등), 경상비(일반관리비, 여비, 자산취득비, 공공요금 등), 사업비(홈페이지 구축·운영, 협의회 운영, 세미나 등)
- 재원조달방안 : 국비 + 도비(도비 100% '23~ '24년, 국비 100% '25년 이후)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과학인재국 청년인재육성과장 이해란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
세 입	-	-	-	-	-	-	
세 출	5,000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
- 충북지역대학혁신 지원센터 운영지원	5,000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
재원 조달	5,000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
국비	소 계	3,000	-	-	1,000	1,000	1,000
	보조금	3,000	-	-	1,000	1,000	1,000
도비	소 계	2,000	1,000	1,000	-	-	-
	보조금	2,000	1,000	1,000	-	-	-